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6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2. 4.
4. 회부일자 : 2019. 2. 12.

II. 제안이유

- 202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III.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03명 (7,416명 → 7,519명)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증원
: 증 1명(5명 → 6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 증 74명(6,893명 → 6,967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 증 28명(518명 → 546명)

2.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3명 (7,416명 → 7,519명)

- 일반직 정원 증원: 증 75명 (6,895명 → 6,970명)

· 5급 이하 소계: 증 75명 (6,813명 → 6,888명)

- 특정직 정원 증원: 증 28명 (518명 → 546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28명 (468명 → 496명)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2] 참고.

3.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 의안 [별첨 1] 참고.

○ 입법예고(2020. 1. 13. ~ 1. 22.)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66호로 제출되어 2019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총액인건비¹⁾ 기준인원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교육협력과-25, 2020.1.2.) 따른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규모는 5,987억 6천 9백만원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상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5,625억 6천 2백만원보다 362억 7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통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6,970명, 교육전문직 546명 등 총 7,519명으로 책정하였는바, 현행 정원²⁾ 보다 103명이 증가한 규모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총 정원 7,416명(일반직 6,895명/교육전문직 518명 등)

○ 이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의 확정산정 내역을 반영하여 일반직은 기존 보다 75명이 증가한 6,970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은 기존 보다 28명이 증가한 54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범위에 따른 인력 운영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27.] [대통령령 제28679호, 2018.2.27., 일부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